

# 붙임1

# 업종별 지원대상 신청자격

지 원 대 상	신청자격
종합여행업, 국내여행업, 국 내 외 여 행 업	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」 제3조에 의거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
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	
휴양콘도미니엄업	
전문·종합휴양업	
야영장업(일반, 자동차)	
관광유람선업	
관광공연장업	
국제회의시설업	
국제회의기획업	
유원시설업(종합, 일반, 기타)	
관광유흥음식점업,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	
관광식당업	
관광순환버스업	
휴양펜션업	
관광케도업	
한옥체험업	
관광사진업	
카 지 노 업	「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 중인 자
기타관광편의시설업(수상레저기구*, 스킨스쿠버, 사륜자동차)	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」 제3조의 기타관광편의시설업(수상레저기구, 스킨스쿠버, 사륜자동차)을 운영 중인 자
미 술 관 · 박 물 관	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에 의거 미술관·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
공 연 장	「공연법」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
관 광 지 , 관 광 단 지 내 주 차 시 설	관광지 및 관광단지내 소재하고, 주차장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「주차장법시행령」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
면 세 점	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국인 면세점사업으로서 관세청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자

지 원 대 상	신청자격
우 수 숙 박 시 설	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」 제55조에 의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자
웰 니 스 관 광 지	「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웰니스 관광지 운영 중인 자
유 스 호 스 텔	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*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받는 경우 제외
관 광 농 원	「농어촌정비법」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하여 운영 중인 자
유 어 장	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53조에 의한 유어장업을 운영 중인 자
우 수 관 광 기 념 품 개 발 지 원	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대한민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(업체)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(업체)
관광교통수단 개선자금 ( 전 세 버 스 )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」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
렌 터 카 업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」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(렌터카업)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※ 자동차 대여 사업 수급조절 계획에 따른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 제외
일 반 숙 박 업	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일반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
농 어 촌 민 박	「농어촌정비법」에 의한 농어촌 민박을 운영 중인 자로 농어촌 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
관 광 면 세 업 ( 사 후 면 세 점 )	「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」 제5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자
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보관·계류업	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
수 상 · 수 중 레 저 사 업	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 중인 자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 사업을 운영 중인 자 ※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“기타관광편의시설업”으로 지정된 사업체는 기타관광편의시설업으로 용자신청하여야 함
관 광 지 원 서 비 스 업 ( 관 광 산 업 특 수 분 류 중 1 2 개 분 류 업 종 )	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중 “붙임2”에 해당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가이드라인(‘20.2.23-문화체육관광부) 관광산업 특수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체

\* 수상레저기구 종류 : 모터보트, 세일링요트(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), 수상오토바이, 고무보트, 스쿠터, 호버크래프트, 수상스키, 패러세일, 조정, 카약, 카누, 워터슬레드, 수상자전거, 서프보드, 노보트, 그 밖에 위의 종류와 비슷한 구조·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

※ 해당 첨부 자료는 2025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업무지침 내용임